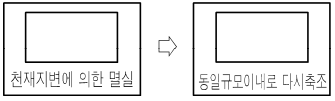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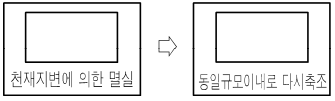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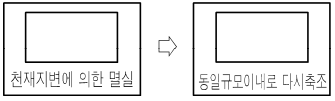


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필기 핵심정리,문제풀이 상권 - 1과목 1차 정오표 [2017.6.5.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=수정된 부분)											
40페이지 9번 문제 해설	건축물에너지 소비 증명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특정한 건축물의 매매·임대 계약 시 공개되는 서식이다.											
83페이지 4 적격심의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464 439 624 477">1. 인정</td> <td colspan="2" data-bbox="624 439 1294 477">평가위원 1/2 이상이 인정으로 심의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64 477 624 633" rowspan="2">2. 불인정</td> <td data-bbox="624 477 703 595">사유</td> <td data-bbox="703 477 1294 59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능개선정도가 기준에 미달 • 기재사항의 허위 • 사업시행의 불가능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624 595 703 633">조치</td> <td data-bbox="703 595 1294 633">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내 재제출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64 633 624 672">3. 보완</td> <td colspan="2" data-bbox="624 633 1294 672">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 제출</td> </tr> </table>	1. 인정	평가위원 1/2 이상이 인정으로 심의		2. 불인정	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능개선정도가 기준에 미달 • 기재사항의 허위 • 사업시행의 불가능 	조치	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내 재제출	3. 보완	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 제출	
1. 인정	평가위원 1/2 이상이 인정으로 심의											
2. 불인정	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능개선정도가 기준에 미달 • 기재사항의 허위 • 사업시행의 불가능 										
	조치	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내 재제출										
3. 보완	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 제출											
90페이지 (5) 건축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64 723 555 761">구분</th> <th data-bbox="555 723 1062 761">행위요소</th> <th data-bbox="1062 723 1414 761">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64 761 555 1227">4.재축</td> <td data-bbox="555 761 1062 1227"> <p>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災害)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</p> <p>가.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. 동(棟)수,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것</p> <p>1)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</p> <p>2) 동수,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「건축법령」에 모두 적합할 것</p> </td> <td data-bbox="1062 761 1414 1227"> <p>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</p>  <p>천재지변에 의한 멸실 → 동일규모이내로 다시축조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행위요소	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	4.재축	<p>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災害)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</p> <p>가.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. 동(棟)수,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것</p> <p>1)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</p> <p>2) 동수,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「건축법령」에 모두 적합할 것</p>	<p>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</p>  <p>천재지변에 의한 멸실 → 동일규모이내로 다시축조</p>					
구분	행위요소	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										
4.재축	<p>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(災害)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</p> <p>가.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. 동(棟)수, 층수 및 높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것</p> <p>1)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</p> <p>2) 동수,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「건축법령」에 모두 적합할 것</p>	<p>도해(행위 전 → 행위 후)</p>  <p>천재지변에 의한 멸실 → 동일규모이내로 다시축조</p>										
97페이지 참고	<p>■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의 적용(다가구 주택, 다세대 주택의 경우)</p> <p>1층 바닥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,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됨</p>											
269페이지 2) 사용계획 수립권자 표	<p>■ 비고 사업주관자는 연구기관, 엔지니어링사업자,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에게 사업계획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(→ 심표삭제)</p>											
과년도 출제문제 377페이지	<p>1번 해설 2. 2.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건축물</p> <p>2번 지문 ③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단지내 전체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대상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